

# 서울특별시

우100-110 서울 서소문동38번지 / 전화 (02)3707-8297 / 전송 3707-8399  
 처리부서: 도시개발과 (서소문별관 제2동 1층) 담당: 이민래, 계장: 박명숙, 과장: 허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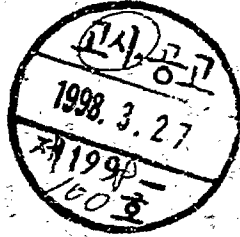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도개 58422-615

시행일자 1998. 3. 27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 결재

참조



취급		시	장
보존		H-11	
주택 국장	전결		
도시개발과장	동	법무담당관집사필	
도심계장	박	도심개발2계장	
기안	이민래		협조

제목 도심재개발 내수구역 지정 변경결정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82호('93.3.22)로 구역지정하고, 동고시 1995-36호('95.2.9)를 사업계획결정 되고, 동고시 제1996-168호('96.10.4), 동고시 제1997-125호('97.4.21) 동고시제1997-221호('97.7.1), 동고시 제1997-250호('97.7.29)로 구역지정 변경 결정된 도심재개발 내수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변경 사항에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별첨 고시문과 같이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고시안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

참조 : 도시관리과장

제목 : 도심재개발 내수구역 지정 변경결정 고시 보고

1. 우리시 도심재개발 내수구역에 대하여 첨부고시문 사본과 같이 재개발구역 지정 변경결정 고시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4항 규정에 의거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및 도면사본 1부. 끝.

(제 3 안)

수신 : 행정자치부장관

제목 : 관보게제 의뢰

1. 다음사항에 대하여 관보게제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종별 : 고시문

나. 게재건명 : 재개발구역 지정 변경결정 고시

다. 게재근거 :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

첨부 : 고시문사본 2부. 끝.

(제 4 안)

수신 : 종로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도심재개발구역 내수구역 지정 변경결정 고시 통보

1. 귀구관내 도심재개발 내수구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재개발구역 구역 지정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, 고시내용을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안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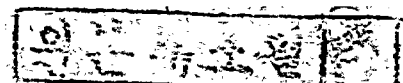
제목 : 도심재개발 내수구역 지정 변경결정 고시 통보

1. 우리시 도심재개발 내수구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구역지정변경 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및 도면 사본 각1부. 끝.

## 도시개발과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공원과장, 조경계획과장



# 고 시 (안)

1998. 3. 27 제 7 / 호  
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위원회  
 김기홍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 - 100호

## 도심재개발 내수구역 지정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고시제1993-82호('93.3.22)로 구역지정하고 동고시제1995-36호('95.2.9)로 사업계획결정되고 동고시제1996-168호('96.10.4), 동고시제1997-125호('97.4.21), 동고시제1997-221호('97.7.1), 동고시제1997-250호('97.7.29)로 구역지정변경 결정된 내수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역지정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4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와 종로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8. 3. 27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도심재개발 내수구역

나. 구역면적 변경 결정 조서

구역명	위 치	구분	시 행 면 적 (㎡)			비 고
			계	대 지	공공시설	
내수구역	종로구 내수동 60번지일대	기정	35,325.6	25,317.9	10,007.7	측량성과결과 구역선 변경없 이 면적정정
		변경	35,460.3	25,286.8	10,173.5	
		증감	증 134.7	감 31.1	증 165.8	

다. 공공시설 변결결정 조서

(1) 공원 및 녹지결정조서

○ 공원이하주차장 설치비는 사업시행지구 면적비율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

시설의 종류	시설의 구분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증 감	
공 원	근린공원	내수동 70-87일대	2,530	2,151.5	감 378.5	- 각 공원 지하부는 공용주차장 설치 (2,900㎡) - 복합도시계획 시설임. - 측량성과 결측량성과 구역선변경 없이 면적
	근린공원	내수동 236-5일대	1,900	2,220	증 320.5	
녹 지	경관녹지	당주동 127일대	560	545	감 15.0	

라. 획지 및 건축시설 계획 결정조서

지구명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연면적 (㎡)	층수 (지상/지하)	높이 (m)	주된용도	비고	
제 1 지구	기정	5,370	53.6~58.9	550~603	51,800 ~ 56,800	15/6	54.7	공동주택	측량성과 결과 구역선변경 없이 면적 정정
	변경	5,338.9	53.6~58.9	550~603	51,800 ~ 56,800	15/6	54.7	공동주택	
제2지구	4,715.4	53.0~57.0	670~730	50,500 ~ 55,500	15/6	51.6	업무시설 (공동주택)	변경없음	
제3지구	9,300.0	55.4 이하	744이하	118,100	16이하/6	59.71 이하	업무시설 (공동주택)	변경없음	
제4지구	5,932.5	55.5~60.0	590~640	58,600 ~ 64,400	15/6	50.7	업무시설 (공동주택)	변경없음	



파. 시행지구에 관한 계획결정조서

개발 구역명	시행 지구 명	위 치	사업시행면적 (㎡)		사업계획내역 (㎡)				비 고
			당초	변경	대지면적		공공시설 면적		
					당초	변경	당초	변경	
계	4개지구		35,325.6	35,460.3	25,317.9	25,286.8	10,007.7	10,173.5	계획공공용지상 기존공공용지 638.3㎡포함
내수 구역	1	내수동 100번지 일대	7,736.0	7,231.9	5,370.0	5,338.9	2,366.0	1,893.0	계획공공용지상 기존공공용지 185.7㎡포함
	2	내수동 72번지 일대	6,692.7	6,565.9	4,715.4	4,715.4	1,977.3	1,850.5	계획공공용지상 기존공공용지 없음
	3	내수동 60번지 일대	12,704.9	13,485.5	9,300.0	9,300.0	3,404.9	4,185.5	계획공공용지상 기존공공용지 309.2㎡
	4	내수동 225번지 일대	8,192.0	8,177.0	5,932.5	5,932.5	2,259.5	2,244.5	계획공공용지상 기존공공용지 143.4㎡포함

※ 공공용지 부담율 (기정 : 18.59% → 변경 : 22.69%)

바.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와 종로구 도시정비과 비  
치도면과 같음 (도면생략). 끝.

